

서울특별시 국군포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425 관 련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3년 2월 28일
제 안 자 : 보건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시장이 등록포로에 대해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, 조례안에 반복되는 조항, 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항 등을 정비함.

2. 주요내용

- 등록포로 지원계획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함 (안 제5조제2항).
- 등록포로 지원사업에 대한 조항을 삭제함(안 제7조).
- 위원회의 설치·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(안 제8조, 제9조).
- 지원신청에 관한 조항 및 시행규칙에 대한 조항을 삭제함(안 제11조 및 제12조).

서울특별시 국군포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국군포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등록포로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, “제10조”를 “제7조”로 한다.

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 정 안	수 정 안
<p><u>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문</u> <u>2. 지원계획의 평가</u> <u>3.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에 관한 조사 및 연구</u> <u>4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</u> <p><u>제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<u>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</u></p> <p><u>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</u> <u>2. 국가보훈처에서 추천하는 사람</u> <u>3. 국군포로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</u> <u>4. 소관 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</u> <u>5.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업무</u> 	<p><u><삭 제></u></p>

서울특별시 국군포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귀환한 참전용사로서의 명예를 향상하고, 억류 및 귀환 중 받은 고통을 치유하며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의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다.

제3조(책무)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등록포로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등록포로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5조(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)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등록포로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등록포로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6조(실태조사)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등록포로의 건강상태, 생활수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등록포로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부처,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